

인천광역시의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의회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881 |
|----------|-----|

제출년월일 : 2009.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제안이유

가. 상위법과 상충되는 보조금 지원 조항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재 사)인천광역시의회정회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의 충당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보조금 지원 조항을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4조).

□ 참고사항

- 가. 실·국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1부.
-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장은 의정회에 대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인천광역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u></p> <p>제4조(보조금의 지원) <u>인천광역시장은 의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u></p> <p>제8조(준용) <u>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 <p><u>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u></p> <p>제4조(보조금의 지원) <u>인천광역시장은 의정회에 대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8조(준용) ----- ----- ----- ---- 「<u>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u>」가 ----- ----- .</p> |

실·국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 평가 등 심의 3. 조직과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 | ○ ○ ○ ○ ○ ○ |
| 실·국별 의 견 수 렴 결 과 | | | |
| 협의개요 | 실·국별 | 제 출 의 견 | 검 토 내 용 |
| ○ 기간 : 2009. 8. 10~ 2009. 8. 20 ○ 내용 : 의견수렴 | | “의견 없음” | |
| 입 법 예 고 결 과 | | | |
| 예고개요 | 의견제출처 | 제 출 의 견 | 조 치 내 용 |
| ○ 기간 : 2009. 8. 10~ 2009. 8. 20 ○ 방법 : 시보 및 인터넷 게재 | 사)인천광역시 의정회 | ○ 사)인천광역시의정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 공공기관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재검토 바람. | ○ 미반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인천광역시의정회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
|-----------|---|
| 관계법령 | <p>□ 「지방재정법」</p> <p>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지방재정법시행령」</p> <p>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p> <p>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p> <p>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p> <p>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사항 없음” |
| 관련자료 | “해당사항 없음” |